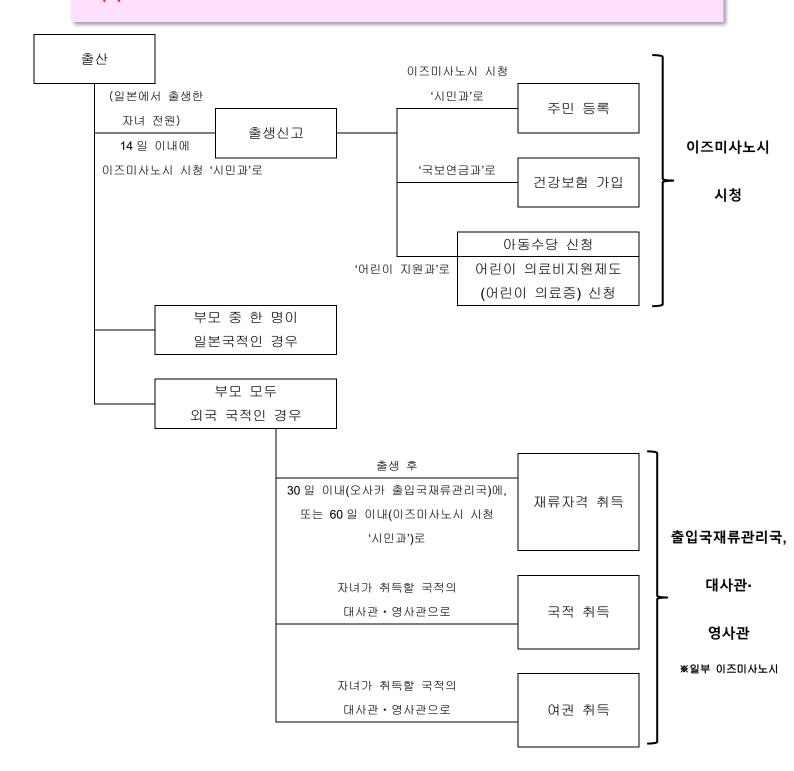
(2) 출산



① 이즈미사노 시청에서의 수속

A 출생신고

자녀가 일본에서 출생하면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, 관청에서 '출생신고'를 합니다. 출생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이즈미사노 시청 시민과에 출생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.

<신고 시 필요한 서류>

- 출생신고(※출생증명서 란은 출산한 병원의 의사가 기재합니다)
- 신고인의 인감
- 모자 건강수첩
- 국민건강보험증(가입자만)

자녀의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인 경우는 출생신고 시 '출생신고 수리증명서'를 교부 받습니다. 자녀의 재류자격 취득 신청 시에 필요합니다.

B 주민등록

출생신고를 하면 그 자녀는 부모의 자녀로서 주민표에 등록됩니다.

자녀의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자녀는 출생일로부터 60 일에 한하여 재류자격을 소유하지 않아도 일본에 재류할 수 있습니다.

자녀가 60일 이후에도 일본에 계속 재류할 예정인 경우에는 출생 후 30일 이내 또는 60일 이내에 재류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, 본 항목 '②출입국재류관리국, 대사관·총영사관에서의 수속 A 자녀의 재류자격취득'을 참조바랍니다.

★수속, 문의처

시민과

전화번호: 072-463-1212 (내선: 2111 ~ 2118)

C 국민건강보험 가입

자녀의 부모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녀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아버지, 또는 어머니가 회사의 '건강 보험'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.

★수속, 문의처

국보연금과

전화번호: 072-463-1212 (내선: 2121~2129, 2197~2199)

D 아동수당 신청

만 0 세부터 중학교 3 학년까지(만 15 세의 3 월 31 일까지)의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은 '아동수당'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외국인이라도 이즈미사노시에 거주하고 있고, 주민등록을 한 사람은 받을 수 있습니다. 출생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육아지원과에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. 매년 6월에 갱신수속을 해야 합니다.

아동수당	월 액수
만 0 세~만 2 세	15,000 엔
만 3 세~초등학교 6 학년까지(만 12 세의 3월 31 일까지)의 첫째 및 둘째 자녀	10,000 엔
만 3 세~초등학교 6 학년까지(만 12 세의 3월 31 일까지)의 셋째 자녀 이후	15,000 엔
※ '3째 자녀 이후'란, 만18세의 3월31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자녀 중에서 세	
번째 이후의 자녀를 말합니다.	
【예】 만 19 세, 만 17 세, 만 9 세의 자녀가 있을 경우	
→ 만 19 세의 자녀는 아동 수당 규정에서 자녀의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	
따라서 만 9 세의 자녀는 호적상 세 번째 자녀이지만, 아동 수당 규정에서는	
둘째 자녀가 되고 이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은 월 10,000 엔이	
됩니다.	
중학교 1 학년~3 학년(만 15 세의 3 월 31 일까지)	10,000 엔

특례급부(소득 제한을 초과할 경우)	월 액수
만 0 세~중학교 3 학년(만 15 세의 3 월 31 일까지)	5,000 엔

E 어린이 의료비 지원제도(어린이 의료증) 신청

만 0 세부터 중학교 3 학년까지(15 세의 3 월 31 일까지)의 어린이의 의료비 일부를 이즈미사노시가 지원합니다.

대상은 이즈미사노시에 거주하고 있고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입니다. 단, 경우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.

★수속, 문의처

육아지원과

전화번호: 072-463-1212 (내선: 2381~83, 2385~87)

② 출입국재류관리국, 대사관·총영사관에서의 수속

A 자녀의 재류자격 취득

출생한 날부터 60 일을 이상 일본에 재류할 경우에는 자녀도 재류자격이 필요합니다.

출생신고를 한 후, 출생일로부터 61일이 경과한 다음에도 재류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.

반드시 기간 내에 재류자격 취득 신청을 해주십시오.

부모 모두,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<u>특별영주자</u>인 경우에는 출생 후 <u>60일</u> 이내에 이즈미사노시 시청 시민과에세 신청해야 합니다.

부모 모두 <u>중장기 재류자</u>인 경우에는 출생 후 <u>30 일</u> 이내에 오사카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신청해야합니다.

재류에 관한 내용은 아래에 문의해 주십시오.

'외국인 재류 종합정보센터'

전화번호: 0570-013904 (03-5796-7112)

http://www.immi-moj.go.jp/info/index.html

B(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경우) 자녀의 국적 취득

자녀가 취득할 국적의 대사관·영사관에서 신청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해당 대사관·영사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.

C 자녀의 여권 취득

희망할 경우에는 자녀가 취득하고 있는 국적의 대사관·영사관에서 신청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대사관·영사관에 확인해 주십시오.

③ 출산 수당 지원

A 조산 시설

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출산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시설입니다.

이즈미사노시가 출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.

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임신 **24** 주 이후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'육아지원과'로 문의해 주십시오. 출산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자격

시민세 비과세의 세대

<신청 시 필요한 서류>

- 모자 건강수첩
- 임산부의 건강보험증
- 인감
- 임산부의 마이넘버(개인번호)를 확인할 수 있는 것(마이넘버 통지카드, 또는 마이넘버 카드) ※이즈미사노시 밖에서 전입했을 경우 등, 상황에 따라 소득 증명서(비과세 증명서)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

★수속, 문의처

육아지원과

전화번호: 072-463-1212 (내선: 2381~83, 2385~87)

B 출산 육아 일시금

국민건강보험이나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출산했을 때 '출산 육아 일시금'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금액은 자녀 1인당 42만엔.

원칙적으로,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됩니다.

<회사에 근무하고 있고, 건강 보험과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만>

출산 휴가 기간 동안의 월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아래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수급 조건 등은 회사로 확인해 주십시오.

C 출산 수당

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출산일의 42일 전부터 56일 후까지의 기간 동안 '출산 수당'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수급액수는 월급의 2/3 정도 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회사로 문의해 주십시오.

D 육아 휴직 급부금

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출산을 위해 회사를 쉬는 동안 '육아 휴직 급부금'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수급 기간은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

수급액수는 월급의 절반 정도 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 회사로 확인해 주십시오.